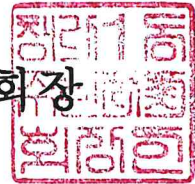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1동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라1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고자 희망하는 주민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28일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1동 주민자치회장



1. 모집인원 : 27명

- 공고일 이후 추가결원이 발생한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인원은 접수 마감일 기준 결원 인원으로 함.

2. 접수기간 : 2021. 10. 28 (목) 09:00 ~ 11. 16 (화) 18:00 (근무시간 중에 한함)

3. 접수장소 : 청라1동 행정복지센터(우 22738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 58)

4. 자격요건

가. 추천 또는 공개모집한 날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

나.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자

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 청라1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청라1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청라1동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청라1동에 소재한 각 급 학교, 법인, 단체의 임직원

※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정될 수 없음.

※ 신청자격의 ‘다’ 부문 자격요건은 공고일 전(前)일인 (2021.10.27.)을 기준으로 하며, 주민자치교육과정 이수 여부는 신청서 접수 마감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확인함.

※ 신청서 접수 후, 주민자치교육과정 이수 관련 확인 서류는 2021.11.17. (수)

18:00까지 제출할 수 있음.

5. 제출서류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 또는 동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 가. 청라1동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또는 추천서 1부. [붙임1][붙임2]
 - 나.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붙임3]
 - 다. 주민자치교육과정(6시간) 이수 확인서류 1부.
 - 라. 청라1동(행정동)에 사업장을 두고 있거나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분	제출서류
사업장 대표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가능)
사업장 종사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기타	기타 확인가능한 서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만 사용됩니다. 또한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위원의 해촉)에 따라 위촉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6.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및 결과통보

가. 선정 절차

신청서 접수 → 서류 심사(신청자격 충족여부 확인) → 공개추첨(신청자 50명 초과 접수 시) → 위원 선정 →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나. 공개추첨 : 2021. 11. 19(금) / 청라1동 행정복지센터 3층 소회의실

※ 공개추첨 일시 및 장소는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통지
다. 결과통보 : 선정 결과 동 홈페이지 게시 및 선발자에 한하여 개별 문자 메시지 통보

7. 기타사항

- 가.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며, 주민자치회 위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최소 6시간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나.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까지로, 2022.12.28.까지입니다.
- 다. 주민자치교육과정은 별도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교육(3시간 인정)

- : www.인천주민자치.kr 접속 ➡ 주민자치학교 ➡ 동영상학습하기 ➡ 평가
- 오프라인교육(ZOOM교육) : 2021. 11월 9일 (화) 17:00/ 2021. 11. 16 (화) 17:00
- ※ 동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민자치 필수교육 안내문 참고

8. 문의처 : 청라1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 담당자 (☎032-718-3582)

[관련 조례]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정될 수 없으며, 해당 동 구의원은 고문으로 참여하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동에 소재한 각 급 학교, 법인, 단체의 임직원
-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위촉 해제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2.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 받은 사
- ② 제1항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다.
- ⑦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⑧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추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⑨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동장이 정한다.
- ⑩ 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